

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계약서

(불법 주정차 단속보조, 견인 대행업체 관리보조 운영)

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 대행업체 관리업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강남구청장(이하 '위탁자'이라 한다)과 계약상대자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(이하 '수탁자'이라 한다)은 '위탁자'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'수탁자'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계약은 '위탁자'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'수탁자'에게 위탁하고, '수탁자'는 이를 승낙하여 '수탁자'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(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-1호)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.

제3조(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) '수탁자'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법주정차 단속관련 및 견인대행 관리업무의 도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며 이외 개인정보의 처리는 엄격히 금지한다.¹⁾

1. 자동차등록원부 조회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감리
2. 정보시스템 기기 도입 및 보강감리
3.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

제4조(재위탁 제한) ① '수탁자'는 '위탁자'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'위탁자'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.

② '수탁자'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'수탁자'는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그 사실을 즉시 '위탁자'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.

제5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) '수탁자'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제2항 및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,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(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-47호, 2019. 6. 7. 시행)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·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6조(개인정보의 처리제한) ① '수탁자'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
② '수탁자'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6조 및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(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-47호)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'위탁자'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1) 각호의 업무예시 : 고객만족도 조사업무, 회원가입 및 운영업무,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, 주소, 연락처 처리 등



③ 제2항에 따라 ‘수탁자’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‘위탁자’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제7조(수탁자에 대한 관리·감독 등) ① ‘위탁자’는 ‘수탁자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, ‘수탁자’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1.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
2.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
3.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
4. 목적 외 이용·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
5.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
6.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‘위탁자’는 ‘수탁자’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‘수탁자’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.

③ ‘수탁자’는 처리수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‘위탁자’에게 결과를 제출 한다.²⁾

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‘위탁자’는 ‘수탁자’와 협의하여 시행한다.

제8조(손해배상) ① ‘수탁자’ 또는 ‘위탁자’의 임직원 기타 ‘수탁자’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‘수탁자’ 또는 ‘수탁자’의 임직원 기타 ‘수탁자’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‘위탁자’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‘수탁자’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‘위탁자’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‘위탁자’는 이를 ‘수탁자’에게 구상할 수 있다.

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, ‘위탁자’와 ‘수탁자’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9. 12. 30.

계약자 ‘위탁자’

강남구청장



‘수탁자’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(인)



2) 「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」(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-1호)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.